

「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6월 5일, 이창열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3년 6월 12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6월 1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이 시행 예정이므로, 평창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 정책의 방향에 발맞추고 평창군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 규정(안 제3조 ~ 제4조)
- 3) 지원사업, 교육 및 홍보사항, 민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
(안 제5조 ~ 제7조)
- 4)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 내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지원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, 이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으며,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·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함.

○ 검토결과,

스토킹 범죄는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, 주거침입, 협박, 상해, 살인 등 후속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,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되며, 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